

- 서울시여성가족재단 · 서울디자인재단 -

업 무 협 약 서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과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(이하 서울시여성가족재단, 서울디자인재단,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.) 양 기관 간의 협력 및 유기적인 콘텐츠 교류를 통하여 성평등한 창업 생태계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

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 및 협력한다.

1.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서울디자인재단의 사업 및 활동 협력
 - 서울시여성가족재단 『스페이스 살림』과 서울디자인재단 『동대문디자인 플라자』의 각종 사업 협력
 - 스페이스 살림 ‘스타트업 홍보관’에 DDP 디자인스토어 입점 및 전시
 - 상호협의를 의하여 양 기관의 입주/입점 기업 상품을 교환하여 판매
 - 상호협의를 의하여 양 기관이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입주/입점 기업 참여
2.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서울디자인재단의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홍보 지원
3. 성평등한 창업 생태계 구현을 위한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가 네트워크 교류

제3조(업무협력 추진방법)

1. 사업방향은 양 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, 활발한 정보 교환을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.
2. 본 협약에 의한 세부 사항은 양 기관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, 양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수정될 수 있다.

제4조(분쟁해결)

1. 본 협약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를

의하여 해결한다.

2. 본 협약서는 제 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제5조(보안)

양 기관은 상호 동의 없이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며, 본 협약서 효력 종료 후에도 비밀 유지의 의미는 유효하다.

제6조(협약내용의 개정)

제 2조(협력분야)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나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제7조(효력 및 해지)

1.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협약을 서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. 다만, 협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협약 갱신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협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며, 협약 갱신 합의가 있는 경우 갱신된 협약의 유효기간은 기존 협약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.
2. 본 협약서의 개정은 당사자 간 서명 협의로 가능하다.
3. 본 협약서에 의해 합의 추진 중인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협약의 유효기간 내는 상호 협력한다.
4. 본 협약서상의 내용을 제외한 내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 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.

제8조(보관)

본 업무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11월 19일



서울시여성가족재단



서울디자인재단

대표이사 정연정

대표이사 이경